

2021 어린이집 평가 지표

영역 3 건강·안전





영역 3 건강·안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요건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은 **신체적** 상해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임, 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포함함



보육교직원은 **실내외 공간의 청결**을 유지하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함
위생적인 생활습관 및 질병의 예방관리,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영유아가 **등원**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항상 주의 깊게 보호하여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 일과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평가 지표

-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2 급·간식

-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4 등·하원의 안전

-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영역 평정기준

-  **우수**
'우수' 지표가 4개 이상
[필수 포함]

-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Y N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Y N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Y N

지표 평정기준

우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보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2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3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4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이 청결함
 - 찌든 때, 먼지, 해충 등이 없이 청결함
 - 해당 공간에 비치된 설비와 비품(가구, 가전제품, 매트,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을 청결하게 유지함
- ✔ **실외 공간**(옥외/옥상놀이터, 화단, 출입구 등)이 청결함
 - 실외 고정식 놀이기구는 녹이 슬지 않고 청결함
- ✔ **화장실과 세면장**(바닥, 변기, 휴지통, 수건 등)이 청결하며, 수건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됨
 - 변기를 사용할 때마다 즉시 물을 내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영아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줌
-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할 때마다 소독함**
 - 개별 영아의 **기저귀 갈이 전·후에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기저귀 갈이대는 일과 중 영유아가 밟고 다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함
- 이동식 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즉시** 처리·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2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 ✓ 보육실 및 실내외 공간의 놀이기구,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청결함
- ✓ 놀잇감이 찌든 때, 먼지 없이 청결함

영아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매일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3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 ✓ 모든 영유아는 개별 침구(개별 이불, 개별 요, 개별 베개)를 사용함
 - 동일한 모양과 색깔일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음
 - 여분의 침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한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하도록 관리함
 - 놀이매트 등은 침구로 사용하지 않음
- ✓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가 청결함
- ✓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함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4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 ✓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의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킴
- ✓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필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함
 - 보육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고 **보육실 문을 자주 열어 환기**함
- ✓ 보육실 및 실내 공간(복도, 유희실, 실내놀이터 등)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음
-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하며,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제대로 작동함
 - ※ 창문의 2/3 이상이 불투명 썬팅지(한지),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경우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함
- ✓ **기록 확인 자료**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함
 - ※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 해당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1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2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3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4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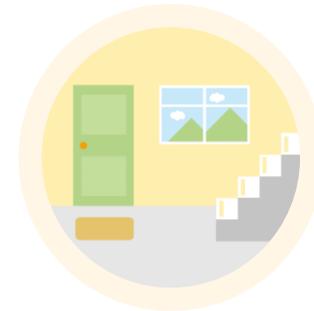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1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 **현관문** :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 **출입문** :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있음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
- ✔ **출입문 문턱** :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음
- ✔ **창문** : 창문 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경우
(2층 이상)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 **천장, 바닥, 벽면** : 균열, 돌출 등 위험 요인이 없음
- ✔ **계단,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 :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 **보육실 및 실내공간** : 벽면 게시판, 선반, 선풍기(안전덮개), 온열기, 돌출형 라디에이터(안전덮개), 화기시설 및 가스밸브(보호장치), 블라인드 및 샤워기 줄, 덤웨이터, 고정식 놀이기구, 책상·의자·활동자료장 등 가구 및 설비, 가전제품 등
- ☑ **실외공간** : 바닥, 고정식 놀이기구,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
- ☑ **전기콘센트** :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에 안전덮개
- ☑ **전선줄** :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 선풍기 등을 벽면에 설치한 경우 전선이 벽면에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 ☑ 세면대, 정수기 : 화상의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

안전조치 방법의 예

온수의 양 조절,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정 등

4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 ☑ 원장실, 교사실 등 :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음
- ☑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 : 출입문, 분리막 등을 닫아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 ☑ 어린이집 구조상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1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2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3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4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1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 ✓ 보육실 내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 실물자료는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2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자전거, 탈것 등은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4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 보관 또는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위험한 물건의 예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 사물용 소독제,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칩핀,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약품(비상약품, 실외활동용 비상약품,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삽, 호미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전기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 **영아 (만0,1세)**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 (블록이나 구슬, 송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3-2

급·간식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Y N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 N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 N

지표 평정기준

우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보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

2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

3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4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



- ✔ **영양사**(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를 사용하고 있음
 -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음
- ✔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함**
- ✔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은 영하 18℃ 이하의 상태로 보관 시간(144시간)**을 준수하여 보존하고 있음
 - ※ 제공된 급·간식(이유식 포함) 모두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
 - ※ 보존식 보관 여부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함

참고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 *출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 **보존식 대상** :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
 (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

보관방법

-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 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
- 보존일 및 폐기일 (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
- 영하 18°C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
- 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임



궁금해요

Q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 식단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간식 식단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영유아가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 급·간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A



궁금해요

Q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자재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1개월 내 50% 미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A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



- ✓ 영유아의 연령, 개별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는 **추가로 배식함**
- ✓ 음식물은 조각이 크지 않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며, 맵거나 짜지 않게 조리됨
- ✓ 영아의 월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이유식의 조리형태(유동식, 반고형식, 고형식)가 달라짐

3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 ✓ 급·간식을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함
 - 조리 절차가 간단하고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라면, 자장면 등)이나 냉동식품, 탄산음료, 과자류가 50% 이상 포함되지 않음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4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 기록 확인 자료

-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 (오리엔테이션, 운영방침, 가정통신문 등)

필수기재사항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대체음식 제공 등)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음
-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음



궁금해요

Q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A



궁금해요

Q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A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필수**



2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3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4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필수**

- ✓ 모든 식자재는 외관, 색상, 냄새 등을 확인했을 때 **변질되지 않은** 상태임
- ✓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함
- ✓ **식자재 보관 장소**(창고, 싱크대, 베란다 등)는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함**
 - 식자재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음

2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 ✓ 어린이집 내의 **식품**(식자재 등)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전혀 없음**

평정대상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식품(수입식품 포함)

- ※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제외
- ※ 가정어린이집에서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평정대상에 포함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본 평가요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예 :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유통기한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A



궁금해요

Q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대상에 포함되나요?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가정어린이집에서 개인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평정대상에 포함됩니다.

A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 ✔ **조리실 바닥, 벽, 천장, 개수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주방가전(냉장고, 전기밥솥 등)**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 이물질 없이 청결함
- ✔ 조리실의 **창문** 및 실외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고, 파손 없이 청결함
- ✔ 후드가 환기구에 잘 연결되어 있고, **후드와 환풍기**는 정상 작동하며 외관 및 주변이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 **쓰레기통**과 그 주변이 청결하며, 모든 **하수구**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 조리실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 식기류,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 도마, 칼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 식수대와 컵 등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함
- ✔ 식수대에 청결한 컵을 비치하여 사용 전·후로 구분하여 사용함
- ✔ 개별 컵을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 관리함
- ✔ 영아 수유용 젓병과 젓꼭지는 1회 사용 후 소독하여 관리함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2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3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



4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조리 시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또는 위생화)이나 덧신을 착용함

※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조리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음
- ✓ 식재료 준비 작업은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하며,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게 이루어짐
- ✓ 조리 중(전처리 작업 포함)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는 별도 손가락을 사용함



궁금해요

Q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는 경우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급·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음식을 데우는 것도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A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음**
-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함
 - 맨손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하나의 **배식도구**(집게 등)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하나의 **가위로 여러 가지 음식**을 자르지 않음
 -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함
 - 공동 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함께 먹지 않음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필수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함

✓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함

※ 데친 채소류, 삶은 고기, 육수 등도 조리의 단계를 거쳤으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준수해야 함





궁금해요

Q 교사용 반찬은 당일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어도 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해야 하므로, 배식을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용 반찬이라 하더라도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김치류 등은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A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함
- ✔ 마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함
- ✔ 정수기 사용 시 **필터와 꼭지**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짐
- ✔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영아용 분유는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함
- ✔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함





궁금해요

Q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Y N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Y N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Y N

지표 평정기준

우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보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1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2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3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4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1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 음식을 다루기 전,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지도 후(기저귀 갈이 등)
- ✔️ 기저귀 갈이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 손 씻기의 대안으로 중간 시점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

2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 음식을 먹기 전(점심식사, 오전·오후간식 전), 바깥놀이 후, 대·소변 이후
-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 씻기를 지원함
 - 유아의 경우 스스로 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함
 - 영아의 경우 옆에서 지켜보며 손 씻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도움을 제공함



궁금해요

Q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에도 매번 손을 씻어야 하나요?

교사가 영유아의 콧물 등을 닦아준 후에도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육실 상황에 따라 바로 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다루기 전 등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A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3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 모든 영유아는 **점심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음**
-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닦기를 지원함
 - 유아의 경우 유아가 **이닦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함
 - 영아의 경우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되 일부 과정이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함
- ✔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며 사용 후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 건조시킴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4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 ✔️ 교사가 영유아의 배변 뒤처리를 해줄 경우 휴지 등으로 충분히 닦고, 사용한 휴지 등은 즉시 휴지통에 넣어 **2차 오염을 방지함**
- ✔️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는 영아의 엉덩이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줌
- ✔️ 배변 실수한 영유아의 뒤처리를 해 줄 때에는 가능한 물로 씻기고 여벌 옷으로 갈아입힘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2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3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4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처리 절차와 교직원 업무분장이 포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필수기재사항

-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최소 3가지 이상 포함)
- 교직원 업무분장

※ 참고자료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6)
-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나 문자로 부모의 동의를 얻고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열제 투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유선 연락 후 동의를 얻어 해열제 투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치 후에는 알림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약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A

참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의 예

☑ 참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재구성]

-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이나 주임교사에게 보고한다.
-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치한다.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의 경우

-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해주거나 보육실의 한쪽 공간에서 자주 쉴 수 있도록 보호한다.
- 응급상황일 경우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한다.
- 보호자가 약을 보냈을 경우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정확히 투약하고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등)에서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경우

-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린다.

참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의 예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예시)

[출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재구성]

구분	내용
찰과상, 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벼운 상처의 경우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함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함
골절, 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 다리를 다친 경우 살살 눕힌 후 종이 박스나 나무 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어 주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화상 부위를 덮어 병원에 방문함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함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음 영유아는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음 (체온손실로 저체온증 우려)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함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2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 ☑ 교사는 등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전언(전화, 알림장 등)으로 확인함

예) 발열, 기침, 콧물, 눈곱, 발진, 기분상태 등

- ☑ 교사는 일과 중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영유아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봄

예)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처짐, 힘들어하거나 움직임이 느림, 활동 중 조용히 있거나 짜증을 냄,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 등

- ☑ 교사는 휴식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을 경우, 휴식공간에서 쉬 수 있도록 지원함

- ☑ 질병으로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침에 따라 조치함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3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 ✓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함
-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함
- ✓ 투약한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함
- ✓ **기록 확인 자료**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필수기재사항 포함)

필수기재사항

- 투약의뢰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횟수), 의뢰자명
- 투약보고 : 투약 여부, 투약자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는 알림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 활용 가능



궁금해요

Q 부모님이 영유아의 투약의뢰서를 기재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의뢰를 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투약의뢰 필수기재사항(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을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합니다.

A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4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 ✔ 어린이집 내에 **비상약품(의약품 포함)**을 구비하고 있음
- ✔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지참하여 활용함
- ✔ 모든 약품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이를 **경과하지 않음**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1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2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3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1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 모든 영유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내역으로 확인 가능함

※ 영아의 경우,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갈음하여 비치할 수 있음

※ 만5세의 경우, 8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함

✔ 모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어 구비됨

필수기재사항

-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의료기관, 보호자 서명

✔ 기록 확인 자료 : 영유아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궁금해요

Q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3회 이상 안내·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수신 확인한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A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2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영유아

- ✓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함
- ✓ 영아의 경우,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이나 개별로 이루어짐
- ✓ **기록 확인 자료** :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행한 기록 (보육일지 등)

보육교직원

- ✓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 **내용** :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등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 **기록 확인 자료** : 보육교직원(원장, 교사, 조리원)이 받은 건강·영양 관련 교육 기록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3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대상** : 임용된 보육교직원,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 일자리 파견자 등
 - ※ 이때, 보육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 **기록 확인 자료**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결과 서류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필수기재사항 포함)이 있음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 영유아 및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감염병 관리수칙은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4권 참조

- ✓ **기록 확인 자료** :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 외에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증상,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안내한 자료(분기별 1회)



등·하원의 안전

3-4-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Y N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Y N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Y N

지표 평정기준

우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보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4-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1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2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3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4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3-4-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1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귀가동의서 내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포함 가능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가 등·하원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2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 모든 원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 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3-4-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3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 ✓ 교사는 오전 일정 시간에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결석 사유 확인** 등을 위해 **오전** 중에 가정에 연락을 취함

4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필수**



- ✓ 하원 시 모든 영유아(차량 이용 영유아 포함)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함**
- ✓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와의 통화나 서면으로 미리 확인을 받음
- ✓ 혼자 등·하원하는 영유아가 없음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2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3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4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 ✔ **보육실 환경**은 교사가 전체 영유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 교사는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한 많은 영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함
- ✔ 전체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 돌연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수시로 확인함

2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 ✔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함
 - 일과 시작 시, 전이활동 후, 보육실에서 유희실, 화장실 이동 시,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 시 등
- ✔ 산책이나 견학 등을 위해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영유아가 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유의하여 살펴봄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 ✔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임교사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을 때 **영유아의 정보와 특이사항**에 대해 전달받음
 - 영유아별 하루 일과의 특이사항, 건강상태, 부모전달사항, 투약 여부 등

4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필수**



- ✔ 교사는 영유아만 남겨두고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음
- ✔ 교사가 등·하원 지도, 휴게시간 사용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다른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움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1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2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3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4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평정기준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Y로 평정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1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 ✔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음

 - 안전수칙에는 운전자 및 동승교사의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음

 -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 단,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W3 또는 II그룹 제품 사용 가능
- ✔ 차량용 소화기(안전핀 고정, 소방약제, 압력 관리), 비상약품 구비(유효기간 관리)되어 있으며 관리되고 있음
-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 하차확인장치의 확인버튼은 차실의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함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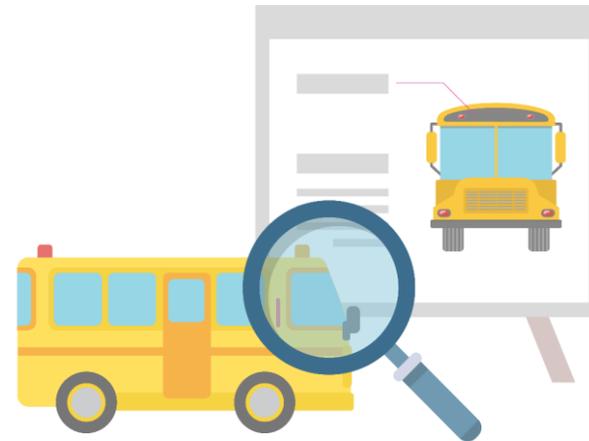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2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 ✔ 차량별로 안전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음
- ✔ 운전자가 매일 차량 이상 유무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기록이 있음
- ✔ 기록 확인 자료 : 차량 안전점검일지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3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 ✔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교육확인증이 있음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의한 신규 또는 정기 안전교육에 한함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수료증 발급 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 ✔ **기록 확인 자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확인증,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수료증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4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함
-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함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장착방법을 준수(등받이 고정 등)하여 장착함
- ✔ 운전자 및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영유아의 안전한 하차를 도움
 -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도움
 - 영유아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함
 - 모든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 전 좌석 확인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확인버튼을 누르고 하차함
- ✔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함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Y N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Y N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Y N

지표 평정기준

우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보통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2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3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4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을 준수하고 있음

영유아 안전교육 종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출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

- ✔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함
 - 영아의 경우,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궁금해요

Q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영아반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0,1세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Q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지표는 어떻게 평정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항목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종류), 실시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A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 ✔ 영유아가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월 1회 이상 있음
※ 지진 등 재난대피훈련 등도 포함 가능(영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에 한하여 인정)
- ✔ 소방대피훈련 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건물 외부로 대피함
- ✔ 기록 확인 자료 : 소방대피훈련 실시기록

3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 ✔ 교사는 영유아가 놀잇감을 던지거나 모래를 또래에게 뿌리는 등의 위험행동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함
- ✔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기구를 정해진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안내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함



궁금해요

Q 소방대피훈련을 할 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로 나가야 하나요?
영아들이 어려서 외부까지 나가기가 어려워요.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교직원과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므로, 영아의 경우에도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외부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A

Q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때 지진이나 폭설 등의 재난대비훈련을 소방대피훈련과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해도 인정되나요?

소방대피훈련은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까지 대피해야 하며, 모든반의 영유아가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은 영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에 한하여 인정하며,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 ✔ 교사는 실외활동을 하는 영유아에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여름철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시간**을 피해 실외활동 시간을 **조정하도록 함**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영유아가 모자를 쓰거나 **차양막 또는 그늘**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함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영유아가 바깥놀이나 물놀이를 장시간 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
 -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산책을 할 경우, 영유아는 필요에 따라 **우산, 비옷, 장화** 등을 갖추고 있음
 - **추운 겨울날** 바깥놀이를 할 때 영유아는 **따뜻한 겉옷과 장갑** 등을 갖추고 있음
 -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신체 활동으로 대체함**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1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필수**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2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3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4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1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필수**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이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지양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보육교직원
 -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2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 ✔ 어린이집에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 비상시 대처방안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필수기재사항

- 비상사태를 대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대피요령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3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이 있음

▪ 교육과정 내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함.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함

면담 예시

-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영유아 질식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 교육받은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4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필수**



-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등

-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음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4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필수**



- ✓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체벌 금지)

면담 예시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거칠게 대하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 학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3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4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음
-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임
- ✓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위험한 물건 등이 없어**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게 관리됨
- ✓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함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함
- ✓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각 층에 투척용 소화기를 추가로 마련한 경우, 투척용 소화기도 파손 및 내용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함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만 구비하여도 무방한가요?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지칭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서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반드시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A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3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에 부착해야 함**
 - ※ 해당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설치 불필요함
- ✓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스누설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4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예시

- 지금 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가?
-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 비상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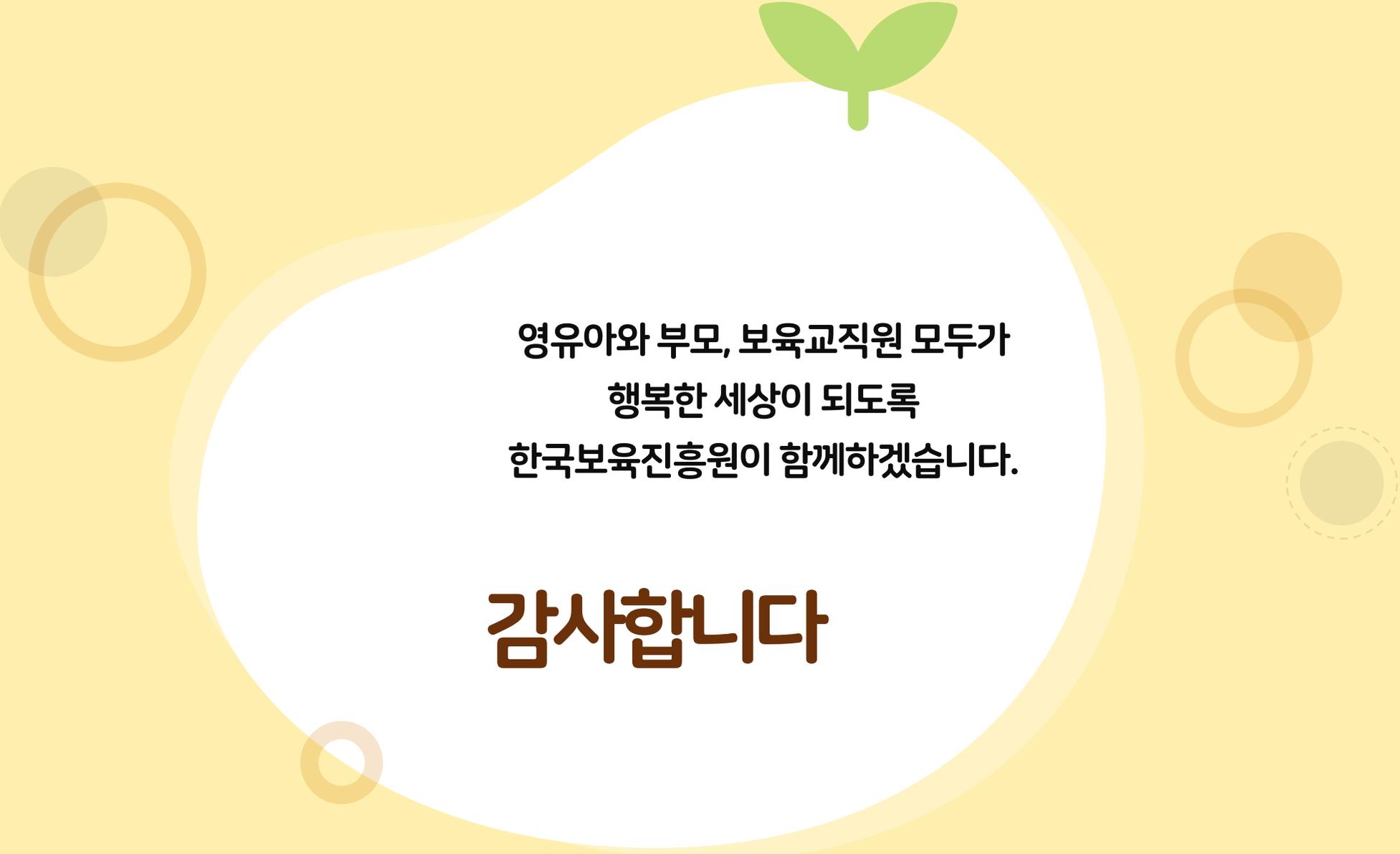
궁금해요

Q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무엇인가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A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한국보육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